

헤어의 규정주의적 윤리설

김 영 기*

• 목 차 •

- | | |
|---|---|
| 1. 머리말
2. 헤어의 자연주의에 대한 규정
3. 헤어의 자연주의에 대한 논박
4. 헤어의 규정주의 | (1) 평가적 판단은 선택 인도적인가?
(2) 선택인도적이면 명령문을 수반하는가?
(3) 명령문을 '수반'하면 명령문을 포함하는가? |
|---|---|

1. 머리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나는 지금 어떻게 행위해야 할 것인가”와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윤리학에서, 특히 메타 윤리학에서, 오래된 문제이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만 하면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형이상학적 윤리설과 자연주의 윤리설),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비록 있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있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만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주어질 수 없으며, 있어야 할 바 또는 우리가 해야 할 바에 대한 근원적인 원리에 대한 인식이 따로 주어져야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이 얻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있어야 할 바 또는 당위에 관한 인식은 우리의 직관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직관주의). 또 어떤 이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은 객관적 사실에 관한 자연과학적 인식처럼 그것의 옳음, 또는 참·거짓을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는 없으며 이는 각각의 행위 주체의 정서 또는 감정의 문제이거나 결단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주관주의'와 '이모티비즘').

무어(G. E. Moore)는, 1903년에 간행된 그의 책「윤리학 원리」*Principia Ethica*에서, ‘자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라는 개념을 제기하여 종전의 형이상학적 윤리설과 자연주의적 윤리설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위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답(윤리적 판단)은 사실에 관한 인식(사실 판단)만으로부터는 도출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과학적임을 자임할 장래의 모든 윤리학을 위한 서설”로서의 그의 직관주의적 방법론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고자 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윤리학자들이 한결같이 빠져들었던 혼동”을 경계하고 윤리학을 객관적인 토대 위에 놓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가 제기했던 ‘자연주의적 오류’는, 그러나 사실 판단의 영역과 가치 판단의 영역을 완전히 분리·이해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적어도 영미의 학계에 있어서는, 윤리학의 학문성 또는 윤리적 문제의 객관적 논의 가능성의 토대를 의심케 하고 윤리적 회의주의를 위한 길을 넓히는 데 일조를 하였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행위의 근본원리가 사실에 관한 인식과 별도로 직관적으로 주어진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올바른 행위의 문제가 각각의 행위자의 단순한 ‘자유로운 결단’의 문제이거나 ‘정서의 문제’라고는 더더군다나 생각지 않는다. 나는 올바른 행위의

* 경북대 철학과 조교수

원리는 우리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 역사적 현실 속에서의 자기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글에서 나는, 이와 같이 짧은 글 속에서 옹호하기에는, 또 단순히 이와 같은 글 속에서만 옹호하기에는 ‘너무 큰’ 이 주장을 직접 옹호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나는 단지 이 글 속에서 헤어(R. M. Hare)의 규정주의적 윤리설(ethical prescriptivism)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 까닭은 그의 규정주의적 윤리설도 역시, 극단적인 ‘윤리적 인식 부정론(ethical non-cognitivism)’이었던 ‘이모티비즘(emotivism)’을 비판하고 그 들과는 달리 윤리적 문제에 답함에 있어서 ‘이성(reason)’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한 것이었으나, 행위의 원리를 세움에 있어서 ‘자유(freedom)’의 역할을 너무 크게 잡음으로써(정확히 표현한다면, 이모티비스트들은 ‘자유’를 자의적인 것으로 보는데 반해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자신도 역시 결국은 자의적인 것으로 보는 쪽의 편향을 보임으로써), 무어를 이어받아, 또 아이러니칼하게도 무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적어도 의식적인)의도와는 달리,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절대적으로 분리·대립시켜 보게 하는 윤리 인식 부정론의 진영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의 절대적인 분리·대립의 해소가 우리의(여기서 슬쩍 ‘나의’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것이 뭐 나만의 무슨 새로운 주장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너무 큰’ 주장을 간접적으로나마 옹호하는 한 계기를 이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²⁾

맨 먼저 우리는, 「자유와 이성」*Freedom and Reason*³⁾에서의 헤어의 자연주의에 대한 규정, 즉, 서술론(descriptivism)의 한 형태로 파악한 자연주의에 대한 헤어의 개념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나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자연주의 윤리설을 논박하는 무어(G. E. Moore)의 논증을 다소 수정함으로써, 무어의 반자연주의적 논증—특히 ‘자연주의적 오류’ 논증—에 대해 가해진 비판을 피할 수 있도록, 무어의 논증—‘가능한 질문 논증(open question argument)’—을 고쳐 진술하고자 하는, 1952년에 발행된 그의 책〈도덕의 언어〉*The Language of Morals*⁴⁾에서의, 헤어의 시도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도덕의 언어〉에서의 주된 주장, 또는 적어도 주된 주장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되는 적극적 논증인 도덕 판단의 기능은 선택을 인도(to guide choices)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판단은 결코 단순한 사실 판단일 수 없으며, 반드시 서술판단으로 환원할 수 없는 규정적인 요소(prescriptive element)를 포함하여야만 한다는 주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2. 헤어의 자연주의에 대한 규정

헤어는 〈자유와 이성〉에서, 자연주의를 그가”서술론(descriptivism)⁵⁾이라고 부르는 것의 한

1) George Edward Moore, *Principia Ethica*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3).

2)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존의 ‘실증주의적’자연주의를 바로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실증주의적’자연주의는 그 역사적 시야와 실천적 성격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검증가능성’을 지향하는 그 외양과는 달리 오히려 늘 주관주의나 회의주의로 빠질 소지를 그 안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3) R. M. Hare, *Freedom and Reason*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4) R. M. Hare, *The Language of Morals*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52).

5) ‘descriptivism’은 통상 ‘기술주의’라고 번역하고 있으며(예 : 김영진 역, 폴 테일러의 『도덕의 기본원리』, 서울 : 서광사), 황경식 교수는 ‘서술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하나 「윤리학」, 윌리엄 K.

형태로 규정한다. 즉, 자연주의자들은 가치어의 의미가 “서술적인 의미규칙”에 의해 완전히 결정된다고 보는 것으로 그는 생각한다: “자연주의자들은 어떤 것에 우리가 가치어를 적용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규칙들은 단순히 서술적인 의미규칙이며, 그리고 이러한 규칙들은, 서술적인 표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낱말들의 의미를 완전히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그[자연주의자]에게는, 가치어는 바로 서술적인 표현의 한 종류이다”⁶⁾ 이와 같이 헤어는 자연주의자들이 일정한 사물에 “좋다”, “옳다”와 같은 가치어를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하는 문제는 (사물을 대하는 주관 또는 주관의 결단과는 관계없이) 사물들의 유사성과 차이성에 의해 완전히 결정된다고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는, 자연주의는 가치어의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일정한 가치 술어를 적용하면서 경험적으로 그와 유사한 대상에 그 가치 술어를 적용하기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 왜냐하면 “두개의 사물이 꼭 같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어떤 서술적인 용어(descriptive term)를 하나에는 적용하면서도 다른 하나에는 적용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비록 그가 그 용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할지라도, 그 표현이 서술적인 용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서술적인 표현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게 될 것”⁷⁾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헤어는 자연주의자들이, 특정한 가치어에 동의하는 사람은 모두 그 가치어를 동일한 대상들에 적용할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들이 관련된 사실에 동의하는 한, 가치어의 적용에 관한 심각한 의견의 불일치는 모두 한갓 언어적 논쟁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리고는, 이에 반대하여, 헤어는 가치어의 적용에 관한 심각한 의견의 불일치는 흔히 단지 가치어의 애매한 사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 원리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것은 바로 가치어가 단순히 서술적인 언어가 아니라 규정적인 언어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자연주의들이, 심지어 가치어를 서술어로 직접 정의하려고 하는 경우에 조차도, 가치어를 정의하면 가치어의 적용에 관한 모든 중요한 문제가 다 해결되며, 따라서 가치어의 적용에 관한 모든 심각한 논쟁은 단순히 단어의 애매한 사용의 경우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 같지가 않다. 바꾸어 말한다면, 자연주의를 서술론(descriptivism)의 한 형태로 보는 헤어의 자연주의에 대한 규정은 자연주의에 대한 너무 지나치게 좁은 해석에 기초한 것 같다.

나는 자연주의는 서술론의 한 형태라는 헤어의 규정은, 헤어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너무 지나치게 좁은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헤어가 염두에 두는 식으로의 서술로서만 가치어의 적용을 확정하는 가치어에 대한 자연주의적 정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자연주의적 정의들이 가치어의 적용을 그렇게 확정하지는 않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옳은 행위(right act)”를 “공중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행위(act that tends to promote public happiness)”로 규정하는 공리주의적 정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해 “옳다(right)”를 적용하는 것을 그 행위에 대한

프랑케나 지음, 서울 : 종로서적), 나는 여기에서 ‘서술론’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황경식 교수가 ‘descriptivism’을 ‘서술주의’로 번역했을 때에도 아마도 그러한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되지만, ‘descriptive’란 말을 ‘기술적(記述的)’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그 우리말 발음이 ‘技術的’의 경우와 동일하여 혹 문맥에 따라 애매하게 여겨질 소지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며, ‘…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경우에는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이다.

6) *Freedom and Reason*, p.16.

7) *Ibid.*, p.13.

일정한 예언을 하는 것과 같은 것(equivalent)으로 취급한다. 그렇지만 어떤 행위에 대한 예언을, “서술(description)”을 헤어처럼 “어떤 사물에 존재하는[감각 경험적인]특색”을 단순히 기술(note)하기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서, “서술”이라고 부르는 것은 별반 그럴 듯하지 못해 보인다. 반대로, 공리주의자들은 옳음이 행위 자체의 특색이라는 것을 강력히 부인하고, 오히려 행위의 옳음은 완전히 그 결과에 의존한다고 주장하면서 특정한 행위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매우 다른 종류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공리주의자는 헤어가 가치어에 대한 자연주의적 정의의 결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즉, 대상들이 꼭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말을 애매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가치어를 한 대상에 적용하면서 다른 대상에 적용하기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해 분명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물론 총체적인 상황이 같다면, 자연주의자는 동일한 두 대상에 대해 하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치어를 부여하면서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그 가치어를 부여하기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헤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즉 주관과 객관과의 관계를 포함한, 총체적인 동일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는 단지 일정한 대상의 대상적 동일성의 측면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공리주의자는, 한때는 “그르다”고 불리웠으나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그르다”고 부르지 말아야 할 많은 관행들(예를 들어, 이자를 받으며 돈을 빌려주는 경우)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옳다”와 “그르다”는 말들의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며, 문제되는 관행이 그것이 한때 갖는다고 생각되었고 또 아마도 상이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는 실제로 가졌던 것과 같은 결과를 이제는 더이상 갖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공리주의자는 말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자연주의자들은 가치어를 단순히 서술적 표현의 한 종류로 간주한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듯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자연주의자들이 가치어를, 그것이 적용되는 대상들의 특색들에 대한 이름으로 간주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 많은 자연주의자들은 이것을 부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가치 판단의 예언적 성격을 강조하였던 뉴이와 같은 이들은 아마도 분명히 가치어가 서술적 표현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반대하였을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어떤 것이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선언하는 것과 구별하여] 어떤 것이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것이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 그것은 예언을 포함한다. … 그것은 그것이 활동적으로 산출할 일정한 결과를 주장하는 것이다. … 그것이 만족스럽다는 것은 판단이며, 평가이며, 감정이다. … 가치에 대한 판단은 경험된 대상들의 조건들과 그것이 산출할 결과들에 관한 판단이다.”⁸⁾ 뿐만 아니라, 그는 가치판단은 규정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⁹⁾

이처럼, 자연주의에 대한 헤어의 규정이 모든 자연주의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더욱기, “공정한(just)”(사람)을 “행위에 있어서 법을 준수하는 사람(He that observes in his actions the laws of his country)”으로 보는 흉스의 정의나 체락주의자(hedonist)들의 “좋다(good)”와 “즐거움을 준다(pleasant)”의 동일시와 같은 가치어와 서술적 표현의 가장 직접

-
- 8) John Dewey, *The Quest For Certainty*(New York :Minton, Blach & Co., 1929), pp.260-61 ;265, Chapter 10, “The Construction of Good” is reprinted in Wilfred Sellars and John Hospers, *Readings in Ethical Theory*(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52; second edition, 1970).
- 9) J. Dewey, *Theory of Valuation*(Chicago :University of Chicargo Press, 1939. 9th Impression, 1958), pp.22-23 참조.

적인 동일시조차도, 헤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의미에서의 서술론자인지는 의심스럽다. 어떤 사람이 법을 준수한다고 말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를 서술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법을 준수한다(law-abiding)”라는 표현을 어떤 특정한 경험적 특성이나 특성들의 집합 때문에만 그 사람에게 적용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법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서술한다면, 물론 우리는 그 사람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을 준수한다고 말하여야 할 입장에 처한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헤어가 지적하듯이, 우리는 우리가 “법을 준수한다”는 말을 애매하게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표현에 아무런 서술적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서술적인 언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을 보여 주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가치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떤 가치어를 특정한 대상에 적용할 때에도 우리가 그에 의해 그와 꼭같은 것이라면 어떤 대상이라도 그 가치어를 적용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것은 헤어 그 자신이 인정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법을 준수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그와 꼭같이 행위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을 준수한다”고 해야 할 입장에 처한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서는 “법을 준수한다”가 헤어식으로 좀처럼 정의된 의미에서 서술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지 않는다. 헤어는 자연주의자들이 가치어는, 경험적으로 관찰된 대상의 특징이 주어진다면, 그 적용이 완전히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서술적이라고, 따라서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물에 그것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를 알기만 하면 되며, 그 이상의 것을 알 필요는 없다.”¹⁰⁾고 생각한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법을 준수한다”가 그러한 의미에서 서술적이라는 것은 그리 분명한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형법에서 ‘위법성의 칙오’¹¹⁾의 경우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나 법에 어긋나는 경우나, 자신은 일정한 특별법에 따라 법 또는 행정을 집행했을 때로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상위법, 예컨대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음을 상기할 때,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이와 유사한 경우에 어떻게 행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도 만만치 않은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단순한 언어적 논쟁으로 간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아, 헤어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치어에 대한 자연주의적 정의는 결과적으로 가치어의 적용에 관한 모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따라서 가치어의 적용에 관한 모든 심각한 논쟁은 단순히 가치어의 애매한 사용 때문에 일어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연주의자들도 그들의 정의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폐락주의자들조차도 대상에 대한 “좋다”라는 말의 적용이 헤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할 것 같지는 않다; 또 “즐거움을 준다”가 서술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이 이 말의 적용이 이와같이 결정된다는 것을 수반(entail)한다고 할 것 같지도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즐거움을 준다”라는 표현을 어떤 사물이 특정한 특색 또는 특색들의 집합을 소유한다고 해서 곧바로 부여하는 것은 아닌 것은, “행복을 증진시키는데에 이바지 한다(tends to promote happiness)”라는 표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

10) Hare, *op. cit.*, p.22.

11) 우리는 또 ‘위법성의 칙오’의 역의 경우로 ‘시민 불복종’ 또는 ‘국민 저항권’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위법성의 칙오’가 자신은 적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결과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인 반면, ‘시민 불복종’ 또는 ‘국민 저항권’의 인정의 경우는 비록 행위자의 행위가 실정법에는 어긋나는 것이지만, 자연법 또는 그 법의 상위법에 비추어보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이다.

라서, 헤어는 자연주의에 대한 너무 지나치게 좁은 개념을 가졌던 듯하다. 자연주의자들은 가치어를 단순히 서술적인 표현의 한 종류에 불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서술적 표현”이 그 말이 적용되는 대상의 경험적으로 관찰된 특색을 지시하는 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3. 헤어의 자연주의에 대한 논박

헤어는, 비록 무어의 자연주의에 대한 논박은 그리 썩 잘 진술되지는 못하였고 광범위하게 비판받았지만, 또 그 귀결로서 그가 취한 방법론적 직관주의¹²⁾는 결국 또 하나의 서술론에 빠진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어의 반자연주의적인 논변 – ‘가능한 질문 논증(open question argument)’ –에는 우리가 주목하여야만 할 합리적인 핵심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헤어는 주장하기를 “사실 우리가 ‘좋다(good)’라는 말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 말을 쓰는 목적에는 무어가 공격하고 있었던 그런 류의 입장[자연주의 윤리설과 형이상학적 윤리설 : 헤어에게는 서술론의 한 형태로서 파악되는 것들]을 견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비록 무어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지 못하였지만.”라고 한다.

무어의 ‘가능한 질문 논증’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 형식의 논증이다 : 자연주의는, 만일 그것이 옳다면, “F”가 비윤리적 표현에 의해 대치될 때, “F인 것은 어느 것이나 좋다”라는 형식의 특정한 윤리적 문장들이 분석적이라는 것을 함축한다 ; 그러나 윤리적 문장들은 결코 분석적일 수 없다 ; 왜냐하면, “F인 것은 F인가 ?”라는 물음은 의미있게(significantly) 물어 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닌 반면, “F인 것은 좋은가 ?”라는 질문은, “F”가 비윤리적 표현일 때, 언제나 의미있게 물어 볼 수 있는 질문(가능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자연주의는 거짓이다.¹³⁾ 헤어 자신도, 무어와 마찬가지로, 종종 윤리적 문장들은 분석적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며, 더 이상 논증의 필요가 없는 것인 양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예를 들어 “A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가 “A는 우리나라의 통치자에 의해 금지되었다”에 의해 수반(entail)된다고 어떤 사람이 주장한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에 우리는 단지, [만일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통치자에 의해 금지된 것은 옳지 못하다”는 “우리 나라의 통치자에 의해 금지된 것은 우리나라의 통치자에 의해 금지되었다”라는 분석적인 문장에 의해 수반될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그 자체 분석적인 문장이 될 터이지만, 일상적인 용법에서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 충분하다.”¹⁴⁾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글에서의 헤어의 주장은 그 어떤 윤리적 문장도 일상적인 용법에서는 분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헤어의 자연주의에 대한 논박은, 사실은 무

12) 직관주의라는 말은 두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넓은 의미로서의 직관주의는,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문제는 직접적으로 증명없이 참임을 알수 있다고 보는 견해를 가리키는데 반해서, 좁은 의미로서는, Henry Sidgwick이 정의한 것처럼, 우리는 특정한 행위들이 옳다는 것을,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또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견해를 가리킨다. 여기서 우리가 방법론적 직관주의라고 표현한 것은 넓은 의미의 직관주의를 가리킨다.

13) 참고, “자연주의적 오류에 관한 논의”(『哲學研究』 제 41 집, 대한철학회, 1985.5), pp.150-55 참조.

14) *The Language of Morals*, p.155.

어의 ‘가능한 질문 논증(open question argument)’을 대체로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무어가 “좋음”을 일종의 형이상학적 성질로 보는 데 반해, 헤어는 그것을 행위 주체 스스로 받아들인 행위자 자신에 대한 규정성으로 본다는 차이점만을 제외한다면, 왜냐하면 무어도, 비록 “분석적”이라는 용어를 직접 쓰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그의 논증을 윤리적 문장들은 결코 분석적일 수 없다는 원리를 토대로 하여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용법에서 윤리적 문장들은 결코 분석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데에, 어떤 종류의 증거가 증거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는 그리 분명치 못하다. 자연주의자들이 “즐거움을 주는 것은 선이다”(Whatever is pleasant is good)와 같은 문장을 분석적인 문장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분명히 참이며, 또 설사 그러한 용법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에게 일상적 용법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사실은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미래에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헤어는 위에서 인용된 예에서 “우리 나라의 통치자에 의해 금지된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문장(1)은 “우리 나라의 통치자에 의해 금지된 것은 우리 나라의 통치자에 의해 금지되었다”라는 문장(2)과는 달리 윤리적인 것이며 분석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자연주의자들은 (1)이 (2)와는 달리 윤리적임은 물론 인정하지만 (1)역시 (2)와 마찬가지로 분석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¹⁵⁾

아마도 무어의 ‘가능한 질문 논증’을 재구성한 것으로 보이는 헤어의 자연주의에 대한 가장 분명한 형태의 논박은 아래의 귀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좋다(good)”에 대한 자연주의적 정의에 대한 우리의 공격은, 만일 “좋은 A”가 “C인 A”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참이하면, C인 A를 권장(command)하기 위하여 “C인 A는 좋다”라는 문장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기초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 문장은 분석적인 문장이 되고 “C인 A는 C이다.”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¹⁶⁾

그렇지만 이러한 헤어의 논증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헤어가 권장함(commanding)으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먼저 이해해야만 한다.

헤어는 권장함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권장하거나 비난할 때, 그것은 언제나,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또 현재나 미래의 선택을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헤어의 자연주의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이 고쳐 진술될 수 있을 것이다.¹⁷⁾

1. 만약 자연주의가 옳다면, “F인 것은 좋다”와 같은 형식의 어떤 윤리적 문장들은 “F인 것은 F이다”와 동치(equivalent)이다.

2. “F인 것은 F이다”라는 형식의 문장들은 결코 선택을 인도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15) 가치어에 대한 자연주의적 정의가 과연 오류인가? 또 오류라면 어떤 의미에서 오류인가에 대한 유명한 논의로는 W. K. Frankena의 “The Naturalistic Fallacy” (*Mind*, Vol. 48, 1939) 가 있는데, 이것은 P. Foot(ed.), *Theories of Ethics*(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pp. 50-63 에도 전제되어 있다.

16) *op. cit.*, pp. 90-91.

17) Roger N. Hancock, *Twentieth Century Ethics* (New York and London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p. 120 참조.

3. 그러나 “F인 것은 좋다”라는 형식의 윤리적 문장들은 선택을 인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4. 따라서 “F인 것은 좋다”라는 형식의 문장들은 “F인 것은 F이다”라는 형식의 문장들과 동치일 수 없으며, 따라서 자연주의는 거짓이다.

형식적으로 이 논증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렇게 재구성된 헤어의 논증도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무어의 가능한 질문 논증에서 문제되었던 점을 그대로 넘겨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⁸⁾ 즉, “F인 것은 좋다”라는 형식의 문장은 언제나 선택을 인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일 뿐, 분석적인 문장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헤어는 가지고 있는가? 자연주의자들은 그런 문장들은 선택을 인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분석적인 것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또 분석적으로만 사용되어 선택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헤어는 단지 그러한 문장들은 실제에 있어서 선택을 인도하며 분석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쟁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문장이 선택을 인도한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을까? 헤어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헤어는 “F인 것은 모두 F이다”라는 형식의 문장은 선택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없는 반면 “F인 것은 모두 좋다”라는 형식의 문장은 선택을 인도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F인 것은 모두 F이다”라는 형식의 문장들이 선택을 인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연주의자간 직관주의자간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F는 좋다”라는 형식의 문장들도, “F”와 “좋다”가 동의어일 때에는, 결코 선택을 인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도, 예를 들어, 어떤 쾌락주의자는 “즐거움(쾌락)”과 “선(좋음)”이 동의어이기 때문에 “모든 즐거움(쾌락)”은 또 단지 즐거움만이 선하다(좋다)”라는 문장은 “즐거움(쾌락)은 모두 또 단지 즐거움만이 즐거움이다”와 같은 뜻이라고 말하려고 할런지 모른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는 또한, 두번째 문장은 선택을 인도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않지만, 첫번째 문장은 선택을 인도한다. 왜냐하면 “선하다(좋다)”라는 단어는 “선”이라는 말 이외에는 그 어떤 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인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어할지 모른다. 일반적으로 말해, 자연주의자는 앞의 표현을 포함하는 문장들과 뒤의 표현을 포함하는 문장들이, 주관에 대해 꼭같은 정서적 의미(emotive meaning)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꼭같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두 표현이 동의어(synonymous)일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 물건은 일본인이 제조한 것이다”와 “그 물건은 왜놈이 만든 것이다”라는 문장들을 비교해 볼 때, 뒤의 것은 앞의 것과는 달리 감정에 호소하고 일정한 연상을 불러 일으키며 일정한 암시를 한다는 점에서, 따라서 뒤의 것을 선택을 인도하는 데 반해서 앞의 문장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에서 이 둘은 동치(equivalent)가 아니라고 주장될 수도 있겠지만, “일본인이 제조한 것”과 “왜놈이 만든 것”은 동의어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연주의자들은 “즐거움을 준다(pleasant)”와 “선하다(good)”를, 비록 일정한 문장 속에서 “즐거움을 준다”를 “선하다(good)”로 대치했을 때 그 결과로 생긴 문장이 전자는 갖지 못하는 선택을 인도하는 힘을 가질지라도, 동의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방금 제기된 문제에 대해 헤어는 물론, 만일 문장 S_1 이 선택을 인도하는 데 반해 문장 S_2 는 선택을 인도하지 않는 한편, 두 문장이, S_1 이 S_2 에는 없는 표현 E를 포함하다는 점에서만 다르다면, E라는 표현은 문장 S_2 에서 표현 E를 대치하는 E_1 과 동의어일 수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18) 참고, “자연주의적 오류에 관한 논의” 참조.

헤어는, 한 쌍의 동의어 가운데서 하나는 선택을 인도하는 반면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도록, 표현들의 선택 인도적(choice-guiding)인 용법이나 기능을 동의어성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이 기준과 함께 “선(좋다)”이라거나 “옳다”와 같은 윤리적 표현들은 선택을 인도하는 반면 “즐거움을 준다”와 같은 비윤리적 표현들은 선택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경험적인 사실은, 자연주의를 논박하는데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위에서 묘사된 헤어의 논증에 대한 대답으로, 자연주의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1) 자신은 선택 인도성(choice-guidance)을 동의어성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2) 윤리적 언사들은 선택을 인도하는 반면 비윤리적 표현들은 결코 선택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1)에 대해 살펴볼 때, 선택 인도성(choice-guidance)을 동의어성의 기준으로 삼기를 거부하는 데에는 일정한 이유가 있는 듯이 보인다. 예를 들어, “X는 거짓말을 하였다”와 “X는 알면서 사실이 아닌 발언을 하였다”의 경우를 살펴보자. 사전적 의미 (또는 객관적 의미)로 볼 때 이것들은 서로 교환될 수 있는 동의어이다. 그렇지만 첫번째 표현에는 두번째 것에는 없는 선택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적어도 그럴듯하게 보인다. 일반적으로 말해, 진리값의 변화없이 상호교환될 수 있는, 또 그런 의미에서 동의어인 많은 표현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듣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들의 선택을 인도한다: 아마도 광고가 가능한 것도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일 것이다. 물론 헤어는 여전히 진리값의 변화없는 상호교환가능성이 동의어성(synonymity)의 충분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헤어의 논증은 동의어성에 대한 일상적이지 않고 자의적인 제안에 기초하게 될 것이다. (2)와 연관해서는, 자연주의자는 비윤리적 표현도 실제로 선택을 인도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우리는 선택 인도성(guiding choices)을 윤리적인 언사의 기준이 아니라고 상정한다: 만일 그것이 기준이라면, 그 어떤 비윤리적 표현도 선택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사소하게 참(trivially true)일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X를 금하는 법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는 보통 X를 하거나 X를 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결단을 인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헤어는, 이것이 선택을 인도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불법적인 것은 그르다’는 또 하나의 전제를 은연중에 덧붙이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런 경우에는 X는 그르다는 추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추론이 모든 경우에 일어난다고 가정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한 추론이 일어남에 틀림없다는 주장은, “X를 금하는 법이 있다”라는 문장이 실제로 선택을 인도한다는 것을 다소 복잡하고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쉬운 방식으로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볼 때 자연주의자는 헤어의 논증을 거부할 일정한 이유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윤리적 언사들은 선택을 인도하고 비윤리적 표현들은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두 종류의 표현들은 결코 동의어적일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침입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싶다. 헤어는 “F인 것은 모두 선이다(좋다)”라는 형식의 문장은 결코 분석적일 수 없다는 것을 밝혀 보이는데 있어서—비록 그의 논증이 시사하는 바는 많지만—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으며, 따라서 그는 자연주의를 논박하는 결정적인 논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과연 자연주의에 대한 결정적 논박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연주의는 단순한 사실에 대한 직접적 호소만에 의해서는 논박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자연주의적 이론 밑바닥에는, 어떤 윤리적 표현은 어떤 비윤리적 표현과 동의어라는 주장이 깔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그러한 표현들이 동의어라는 주장은 일상적인 언어에 관한 경험적인 주장이거나 일정한 인공 언어의 규칙들 가운데 하나인 제안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자연주의가 참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단순한 경험적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선하다(좋다)”

와 “즐거움을 준다”가 일상어에서 동의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동의어성의 기준에 대해 결정하지 않고는 결정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앞의 논의에서, 동의어성에 대한 논쟁이 윤리적 언사들에 대한 자연주의적 정의에 관한 논쟁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밝히려고 했다. 그러나 한편, 만일 자연주의를 인공 언어의 규칙에 의거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자연주의의 수용의 문제는 그러한 인공 언어를 채택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아놓든 그 어느 경우에도 자연주의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경험에 직접 호소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자연주의에 대한 논박은 자연주의적 이론은 사실에 어긋난다는 식의 이론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4. 규정주의

헤어에게서 평가적 언어와 서술적 언어의 구별의 전제가 되는 것은 평가적 언어는 서술적 언어와는 달리 규정적 성격(*prescriptivity*)을 갖는다는 믿음이다. 도덕 판단은 그것이 전형적 용법으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즉 평가적으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바로 이 규정적 성격을 그 특징으로 갖기 때문에 서술적 표현과 구별된다고 헤어는 생각한다.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헤어는 ‘규정주의(*prescriptivism*)’로 이름한다.¹⁹⁾ 그렇지만 헤어가 평가적 언어의 특징이라고 믿는 이 규정적 성격 또는 규정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과연 그것은 헤어가 믿듯이 평가적 언어를 서술적 표현으로부터 구분시키는 평가적 언어만의, 또 평가적 언어는 모두가 갖는 평가적 언어의 특색이 될 수 있는가?

‘도덕의 언어’에서 헤어는 도덕 판단의 기능은 선택을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사실에 관한 판단일 수 없고 서술적 요소로 환원될 수 없는 규정적인 요소를 포함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한다.²⁰⁾ 그렇지만 도덕 판단들이 어떤 의미에서 선택과 행동을 인도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것들은 왜 “규정적 요소”를 포함하여야만 하는 걸까?²¹⁾ 이러한 문제에 대한 헤어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선택이나 행동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도덕 판단은 만일 어떤 사람이 그것에 동의한다면, 그는 그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일정한 명령문에도 동의하여야만 하는 그런 것이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러한 명령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가 평가적 의미에서는 그 도덕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물론 비록 그가 어떤 다른 의미에서는 그 판단에 동의한다 하더라도—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참인 것은 바로 평가적이라는 말에 대한 나의 정의에 의해서이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도덕 판단은 명령문을 수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 판단이 다른 판단을 수반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만일 우리가 그 판단들을 잘못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첫번째 판단에 동의하면서 두번째 판단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않을 수 없다(*cannot*)”는 논리적 의미에서의

19) *Freedom and Reason*, p. 24.

20) *The Language of Morals*, p. 195.

21) C. L. Stevenson은 자신의 논문 “The Emotive Meaning of Ethical Terms” (*Mind*46, 1937. Reprinted in Sellars and Hospers, *Readings in Ethical Theory*, 1970 edition)에서, 진술은 역동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선택을 인도하면서도 순전히 서술적인 의미만을 인정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않을 수 없다(cannot)”이기 때문이다. – 만일 어떤 사람이 첫번째 문장에 동의하고 두번째 문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것만으로도 그가 첫째 문장이나 둘째 문장을 잘못 이해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²²⁾

만일 도덕 판단이 선택을 인도한다면, 그렇다면, 그것들은 명령문을 수반하여야 한다. 그리고 헤어에 의하면, 그 어떤 순수한 사실 진술도 명령문을 수반할 수 없다; 따라서 만일 어떤 판단이 명령문을 수반한다면 그 명령문은 이미 그 판단 자체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 의미상, 전제들의 연접문에 함축되어 있지 않은 그 어떤 것도 타당한 연역적 추론의 결론에 나타날 수 없다. 이로부터, 만일 결론에 명령문이 존재한다면, 하여간 어떤 명령 문이 전제에 나타나야 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명령문이 전제에 함축되어 있어야만 한다.”²³⁾

지나친 단순화와 왜곡의 염려가 상당히 있긴 하지만,²⁴⁾ 우리는 이 인용문들을 결합하여 아래와 같은 좀더 형식적인 논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1. 어떤 판단이 평가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선택을 인도하도록 사용된다는 것이다.
2. 만일 어떤 판단이 선택을 인도한다면, 그것은 명령문을 수반하여야만 한다.
3. 만일 어떤 판단이 명령문을 수반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 속에 명령문을 포함해야만 한다.
4. 따라서, 도덕 판단이 평가적으로 사용될 때, 그것들은 명령적(즉, 규정적)요소를 포함해야 하고 단순히 사실에 관한 진술일 수 없다.

아래의 논의에서 나는 이 논증을, 이것이 반드시 헤어의 입장에 대한 정확한 묘사라고 주장할 뜻은 없으나, 하나의 모델로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 논증을 비판하면서 나는 헤어의 입장에 내재할 수 있는 몇가지 난점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문제들을 검토할 것이다 : (1) 어떤 판단이 평가적으로 사용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선택을 인도하는데 사용된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은 과연 사실인가? 다시 말해서, 어떤 판단이 ‘평가적’이면, 또 ‘평가적’인 경우에만, ‘선택 인도적’이라는 것은 과연 사실인가? (2) 만일 어떤 판단이 행위나 선택을 인도한다면 그것은 어떤 명령문을 수반해야만 한다는 것은 과연 참인가? (3) 만일 어떤 판단이 명령문을 수반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 속에 그 의미의 일부로서 어떤 명령문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은 과연 참인가? (1)의 경우에 나는, 헤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식으로 선택 인도적(choice-guiding)이지는 않지만 (헤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선택 인도성은 결과적으로 어떤 이들에게 선택 인도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통상 평가적이라 불리워지는 도덕 판단의 수많은 용법이 있음을 밝혀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용법들이 비록 그 말의 사회역사적인 기원에 있어서는 행위 인도적 용법에 의존하고 있을지라도, 헤어가 말하는 식으로 선택인도적인 용법에 논리적으로 [그 의미에 있어서] 의존한다는 것은 그리 분명한 사실이 못된다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2)의 경우에, 나는

22) Hare, *op. cit.*, pp. 171-72.

23) *Ibid.*, p. 32.

24) *Freedom and Reason*에서 Hare는, 자신은 “명령문(imperative)”이라는 용어를 자신에 대한 일부 비판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좁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고 있다.

판단들은 선택을 인도하기 위해서 명령문을 수반 할 필요가 없으며, “선택을 인도함”의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명령문을 – 적어도 통상 이해되는 바 대로의 명령문은 – 수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3)의 경우에, 나는 수반(entailment)에 관한 헤어의 기준에 의하면 만일 어떤 판단이 명령문을 수반한다면 그 판단은 그 판단의 의미의 일부로서 명령문을 포함해야만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왜냐하면 판단들은 때때로 순전히 서술적인 의미만을 갖지만 동시에 이러한 의미에서의 명령문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의 목적은 도덕판단은 결코 환원될 수 없는 규정적 요소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도덕판단은 언제나, 또는 때때로라도, 단순히 사실 판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는 헤어는 도덕 판단에 전형적인 규정적 용법을 강조함에 있어서는 옳았다고 하는, 내가 보기에도 오늘날의 철학자들 사이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에 도전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이것은 자연주의자들이 부정할 필요가 없는 점이라는 것을 주장할 뜻은 있지만.) 아래의 논의의 목적은, 오히려, 도덕판단의 논리적 성격은 헤어의 논증이 우리에게 주기 쉬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에 있다. 도덕판단에는 선택 인도적인 용법 외에도 여러 가지 용법이 있다. 또 도덕판단이 갖는 선택 인도적 역할은, 그것은 명령문을 수반한다고, 또 명령문을 수반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동어반복적으로, 규정적인 용법이나 권장적 용법 외에는 그 어떤 언어적 용법에도 특유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1) 평가적 판단은 선택 인도적인가?

위에서 인용했던 문장에서 헤어는, 도덕 판단이 평가적으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명령문을 수반한다는 것을, “평가적이라는 말에 대한 나[헤어 자신]의 정의에 의해 참”인 것이 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평가적”이란 말이 지난 이전의 그 어떤 의미도 고려하지 않고 도입된 자의적인 정의이어서는 안된다. 만일 그렇다면 헤어는, 도덕적 판단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실을 서술하는 데에 사용되었을 때에만 평가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것을, “평가적”이라는 말에 대한 그 자신의 정의에 의해 참으로 만드는 자연주의자에 대해 아무런 반대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헤어는 자신의 이러한 정의가 문제를 명확히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는 듯하다. 헤어에 따르면, 자신이 제안한 정의의 배후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즉, 가치어를 포함하는 일군의 문장들이 있으며, 이러한 문장을 가운데 일부는 명령문을 수반한다. 그리고 “도덕적 언어에 대해 탐구하는 논리학자에게 주된 관심이 되는”것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가치어를 ‘포함하는 문장을 골라낼 수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며, 가치어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이미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가치어”(value-word)라는 표현에 일정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며, 어떤 표현을 가치어의 목록에 포함시킬 것인지 배제시킬 것인지를 결정할 일정한 기준이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준은 과연 어떤 것인가? 내가 보기에도, 헤어는 이미 일정한 대답을 적어도 시사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가치어는 “우리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나 미래에 있어서의, 선택을 인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어떤 표현에 대해 그것이 가치 표현(value-expression)이라고 말하는 것은, 헤어에 따르면, 그것이 선택을 인도하는 데에 사용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특히, 어떤 도덕 판단이 가치 판단(value-judgement)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선택을 인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내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일 (가치 판단으로서의) 어떤 도덕 판단이 선택을 인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면, 그것은 직

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간에 어떤 행위자—말하는 사람 자신이건, 어떤 다른 사람이건, 또는 어떤 행위자 그룹이건 간에—를 겨냥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아래의 것들이 참임을 믿어야만 한다: 행위자는 그 판단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위치나 처지에 있으며, 선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어떤 도덕 판단이 어떤 행위자에게 말해지지 않거나 또는 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행위자가 그 판단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거나 그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판단은 선택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 판단은 (1) 행위자가 선택을 할 수 있거나 달리 행위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아니할 때에도 행위나 선택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으며 (“우리는 저 둑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또 평가적 판단 일반에 대해서 말하자면, 가치 판단은 (2) 평가의 대상이 무생물이어서 선택이나 행위의 주체가 뚜렷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상을 찬양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곳은 참 훌륭한 경치다”, “오늘은 참 좋은 날씨다”). 이러한 경우들은 분명 행위를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판단을 평가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별반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여, 도덕 판단에는, 또는 일반적으로 말하여 가치 판단에는, 선택을 인도하는 것 외에도 다른 용법이 많이 있으며, 따라서 도덕 판단이 가치 판단으로 사용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선택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은 참이 아니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 헤어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펼친다: 비록 도덕 판단에는 선택을 인도하는 것 외에 여러가지 용법이 있지만, 이러한 용법들은 모두, 완전한 견본으로서의 도덕 판단의 전형적인 용법이 약간 ‘색갈이 바랜(off-colour)’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도덕적 유약성(moral weakness)’을 반영하는 것이다.²⁵⁾ 그리고 이러한 용법들은 모두, 만일 우리가 먼저 그 선택 인도적인 용법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면, 이러한 다른 용법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논리적으로 선택 인도적인 용법에 의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른 용법들은 모두 이차적인 것이며, 파생적인 것이다. 그리고 도덕 판단의 평가적 용법을 그것이 갖는 선택 인도적인 용법과 동일시하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사실—즉, 선택 인도적인 용법이 기본적인 것이며, 다른 모든 용법은 논리적으로 그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선택 인도적이지 않은 다른 모든 용법은 선택 인도적인 용법에 의존하는가? 오히려 이것 못지 않게 선택 인도적인 용법이 대상(상황) 서술적인 용법에 의존하지는 않는가? 예를 들어 말을 배우는 아이들이 “…(말아)야 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배우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특정한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뜨거운 남비를 만지려고 하는 경우, 우리는 먼저 “엇 뜨거!”하고 난 다음, 뒤이어 “이거 만지면 안돼!”하면서 아이를 타이른다. 이런 경우, 어린 아이가 “…해서는)안돼!” 또는 “…(말아)야 한다”와 같은 말을 익히게 되는 것은 자신이 특정한 경험(자신이 싫어하고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전달(서술(?))하는 말(예컨대 “엇 뜨거!”)이나 자신의 보호자가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전달하는 말(예컨대 “지지!”)과 더불어 그것들을 통해서는 아닌가? 여기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엇 뜨거!”나 “지지!”와 같은 말이 단지 서술적인 의미만을 가질 뿐, 선택 인도적인 의미(‘규정적 의미’)는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서술적인 용법이 규정적인 용법에 의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며, 오히려 그 규정적 의미가 서술적 의미에 의존한다. 또는 적어도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일 따름이다.

25) *Ibid.*, pp. 67-70.

(2) 선택 인도적이면 명령문을 수반하는가?

앞에서 나는 도덕 판단에는 선택을 인도하는 것 외에도 많은 용법이 있음을 밝혀보려 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용법들은 선택 인도적인 용법에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 아님을 밝혀 보려 했다. 이제 나는 우리가 앞에서 요약하였던 헤어의 논증에서의 두번째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즉, 만일 어떤 판단이 행위나 선택을 인도한다면, 그것은 명령문을 수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주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나는 내가 앞에서 얘기한 내용에 대해 일어날 수 있는 반론도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는 우리가 도덕 판단을, 다른 사람들의 행위나 선택을 곧바로 인도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단순히 행위나 선택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여전히 “해야한다”, “해서는 안 된다”, “좋다” 따위의 말들을, 그것들이 선택을 인도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때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래서 혹 다음과 반론이 제기될지도 모르겠다: 즉, 그렇지만, 그 의미는 동일할 수 없으며,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말들이 선택을 인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을 때에는 (예를 들어, “여기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oughtn’t)”이러한 말들이 들어 있는 판단은 특별한 논리적 특성, 즉 명령문 (“여기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을 수반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이 선택을 인도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러한 논리적 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론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다. 즉, 선택을 인도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도덕적 언사들은 그 말들이 선택을 인도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때에 갖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도덕 판단은 선택을 인도하는 것 외에도 다른 많은 용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다른 사용례의 경우에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반론은, 도덕 판단이 선택을 인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논리적 성격—즉, 명령문을 수반한다는 성격—에 의해 구별된다는 주장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장은 내가 의문을 제기하려는 바로 그 주장이다.

어떤 사람의 선택을 인도한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특정한 행위 과정을 지시한다는 것은 아니며 또 “이것을 하라”고 말하거나 함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선택을, 그에게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는가를 직접 말하지 않고도, 그에게 다른 어떤 대안들이 있는가 또 그결과들은 어떠할 것 같은가에 대해 말함으로써 인도할 수 있다. 또는, 우리는 행위자에게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는가를 직접 말하지 않고도, 다른 선택보다는 어떤 특정한 선택을 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더우기, 선택을 인도하는 데에는 명령보다는 훨씬 약한, 그 어떤 분명한 방식으로도 명령문을 수반하지 않는—예를 들어, “나는 너에게 X를 할 것을 충고한다”거나 “만일 내가 너라면 나는 X를 하겠다”와 같은—여러가지 형태의 담화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표현은 “X를 해라”라는 명령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사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판단은 선택을 인도하기 위해 (“명령”이란 말의 일상적 의미에서의) 명령을 수반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지어 다른 사람의 선택을 인도하는 것은 “X를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에도 일정한 의미가 있는 듯하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직접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를 위해 그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 직접 선택을 하는 것인 반면, 어떤 사람의 선택을 인도한다는 것은, 그가 그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마나한 말이겠지만, 만일 어떤 판단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말해준다는 의미에서 선택을 인도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X를 해라”를 주장하거나 함축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선택을 인도함(guiding choices)”이라는 표현의 유일한 의미이거나 심지어 가장 익숙한 의미도 아니다.

헤어는 선택에 직면한 사람에게 말해진 도덕 판단은 명령문을 함축한다는 겉보기에 설득력 있는 논증을 제시한다. 앞에서 인용된 그 논증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

“만일 그가 그 도덕적 판단에 동의한다고 말하고는 그 명령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도덕 판단을 (말한 사람은 그것을 평가적인 뜻으로 썼는데도 그것을 비-평가적(non-evaluative)으로 해석함으로써) 잘못 이해하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 판단은 명령문을 함축한다고 말할 수 있다 : 왜냐하면 어떤 한 판단이 다른 판단을 수반(entail)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판단들을 잘못 이해하지 않고서는 첫번째 판단에 동의하면서 두번째 판단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²⁶⁾

이 논증은 다음과 같이 그 흐름이 간추려질 수 있을 것이다 :

1. 한 판단이 다른 판단을 수반한다는 것은, 만일 그 두 판단이 모두 이해된다면, 우리가 첫번째 판단에 동의하면서 두번째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2. 만일 “나(너희, 우리)는 X를 해야 한다”라는 형식의 도덕 판단이 가치 판단으로 이해된다면, 우리가 그것들에 동의하면서 “X를 해라”라는 명령문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3. 따라서 “나(너희 우리)는 X를 해야만 한다”라는 형식의 도덕 판단이 가치 판단으로 이해된다면, 그것들을 “X를 해라”라는 판단을 수반한다.

만일 이 논증이 결정적인 것이었더라면, 헤어의 논점은 확고히 확립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비록 어떤 판단이 선택을 인도한다는 사실이 곧 그것이 명령문을 수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도덕 판단이 선택에 직면해 있는 행위자에게 말해졌을 때에는 명령문을 수반한다는 사실은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논증은, 내가 생각하기에, 결정적인 것이 못된다. 우리가 “나(너, 우리)는 이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와 같은 판단에, 그것을 가치 판단으로 이해하면서, 동의할 때에는, “이 병실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라는 명령문에 동의 하여야만 한다는 것도 그리 즉각적으로 명백한 것 같지가 않다. “나는 이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담배를 한 대 피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라는 표현을 평가적 의미로는 사용할 수 없고, 단지 “병원에서는 담배를 금지하고 있다”라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흡연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서술적인 의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그리 분명하지 않을 것 같다. 더우기, 이러한 주장을 검증할 아무런 방법도 없다.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는 이 병실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라는 판단을 평가적 의미로 이해하였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별개의 독립적인 방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헤어는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독립적인 방법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여기서 “어떤 판단을 평가적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면서 그 명령문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는 방식으로 어떤 판단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면, 이 논증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헤어는, 어떤 사람이 어떤 도덕 판단에 평가적 의미로 동의하였는가 아닌가를 가려낼 방법을

26) *The Language of Morals*, p.172.

한가지 제시하기는 한다. 그것은 바로 그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헤어 그 자신 이러한 방법은 결정적 시험이 못됨을 지적한다 : 이것은 단지 “각각의 모든 사람은 언제나 그가(평가적 의미에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 분석적”일 경우에만 결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다’는 말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방식으로 “동의한다”는 말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도덕 판단에 평가적 의미에서 동의하였는가 아닌가를, 그의 행동을 조사함으로써 알아 낼 수는 없는 일이다. 비록 이것이 그가 동의하였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지라도 그러나 평가적 의미에서 어떤 도덕 판단에 동의하였는가 아닌가를 결정할 결정적인 시험방법이 따로 없는 한, 특히 상대방 스스로 자신은 특정 판단을 평가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반해서 그가 사실은 그 판단을 평가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을 밝혀줄 결정적인 시험방법이 따로 없는 한, 우리는 어떤 도덕 판단에 평가적 의미에서 동의하면서도 명령문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게된다. 따라서, 헤어는 도덕 판단은 언제나 명령문을 수반한다는 주장을 확고히 입증하지는 못한 것이 된다. 물론 명령문을 수반하는 용법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그리 명확치 않다.

(3) 명령문을 ‘수반’하면 명령문을 포함하는가?

이 절의 앞 부분에서 나는 도덕 판단이 선택을 인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명령문을 수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논증하였다. 또한, 나는 도덕 판단이 평가적으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언제나 명령문을 수반한다는 것도 입증할 방법이 없는 주장이라고 논증하였다. 나는 이렇게, 앞에서 제기된 반대, 즉 선택을 인도하기 위해 사용된 도덕 판단은 다른 용법에는 없는 논리적 성격(명령문을 수반한다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용법에 사용된 가치어는 그것들이 선택을 인도할 적에 갖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닐 수는 없다는 반대를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선택을 인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덕 판단은 명령문을 수반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미의 차이가 있음에 틀림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 아이들이 거리에서 놀지 못하도록 해야 했다”라는 문장의 “…해야 했다(ought)”는 “너는 너의 아이들이 거리에서 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의 “…해야 한다”와 다른 의미를 지님에 틀림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비록 도덕 판단이 때때로 명령문을 수반한다고 할지라도, 수반(entailment)에 대한 헤어의 기준에 의하면, 도덕 판단은 단순히 사실 판단일 수 없으며²⁷⁾, 사실 판단으로 환원할 수 없는 규정적 요소를 포함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저절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수반에 대한 헤어의 기준에 의하면, 설사 어떤 판단이 명령문을 수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자체 속에 명령문을 포함(contain)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간호원 A가 방문객 B에게 ”선생님, 이 병실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보자. 헤어의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A의 판단은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라는 명령문을 수반

27) 이 대목에서 종종 자연주의자에 대한 오해 – 허수아비 만들기 – 가 일어난다. 다시 말하지만, 자연주의자들이 도덕 판단을 사실 판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도덕 판단이 일상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과 같은 도덕 판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즉 규정적 힘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정의되는 가치적 표현과 정의하는 서술적 표현이 동등한 인식적 가치, 동등한 객관적 내용을 갖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일 따름이다.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그럴 듯하게 보인다 : 만일 B가, “이 병실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라는 판단을 A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안다면, 그가 명령문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그것에 동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A의 판단이 명령문을 수반한다는 것이 저절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 판단 자체는 사실 판단으로, 예를 들어, “이 병실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병원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로 정확히 번역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B는 A의 판단을 이러한 의미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어떤 판단이 우리가 그로부터 명령문을 추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을 때, 그 판단은 그 자체가 명령문을 포함해야만 하고 단순한 사실에 관한 진술일 수 없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명령문을 추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그 판단 자체에 암묵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명령적 요소라기 보다는, 그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 상황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판단이 우리가 명령문을 추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황에서 사용되었을 때에는, 그것은 명령문으로서 사용된 것이며 단순히 사실 판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 나아가 그 주장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 즉, 어떤 판단이 명령문을 포함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명령문으로써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따름이다. 따라서 어떤 판단이 명령문을 수반할 때에는 언제나 명령문을 함축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판단이 명령문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그것이 명령문을 함축한다는 것을 아는 것 외에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그 판단 자체로부터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 우리는 그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사 도덕 판단이 명령문을 수반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나는 도덕 판단들이 명령문을 수반할 때에는 그것들은 바로 그 판단의 의미의 일부로서 규정적 요소를 포함해야만 하고 따라서 단순히 사실에 관한 진술일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글을 요약하자면, 나는 맨 먼저 「자유와 이성」에서 자연주의를 비판하는 출발점으로서의 헤어의 자연주의에 대한 규정, 즉, 서술론(descriptivism)의 한 형태로서의 자연주의에 대한 규정은, 근래에 윤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자연주의”라고 불리워져 온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좁은 것임을 지적하였다. 자연주의자들은 “서술적(descriptive)”이라는 말의 매우 넓은 의미에서는, 가치어를 서술적이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자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치어는 단지 서술적인 표현의 또 하나의 종류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쉬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주의자들은 가치 판단의 규정적 용법을 완전히 모르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물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한, 가치어에 대해 자연주의적 정의를 내린다고 해서, 가치어에 대한 자연주의적 정의가, 헤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가치어의 적용에 관한 모든 심각한 의견의 불일치를 단순한 언어적 논쟁으로 전환시킨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자연주의자들도 분명 이러한 결과를 의도하고 있지 않다. 물론 자연주의자들은 가치어를 정의함으로써 가치어의 적용에 관한 심각한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치어의 정의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나는, 자연주의에 대한 헤어의 논박은 대체로 무어의 가능한 질문 논증을 수정·계승한 것으로서, 이는, 무어와 마찬가지로, 윤리적 문장은 결코 분석적일 수 없다는 자기 나름의 통찰 또는 직관에 의존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자연주의자들은 일정한 윤리적 문장을, 예컨대 “옳은 행위란 공중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행위이다”와 같은 문장을, 비록 윤리적인 것이지만 분석적인 것으로 파악하며, 이러한 자연주의적 견해는 결코 단순한 감각 경험적 사실에만 호소함에 의해서는 논박될 수 없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나는, 첫째로, 도덕 판단에는 선택을 인도하는 용법 외에도 여러가지 다른 용법들이 있으며 이러한 다른 용법들은 헤어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 분명히 선택 인도적 용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로, 특정한 판단이 선택을 인도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해서 그것이 명령문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세째로, 설혹 명령문을 수반하는 도덕 판단의 용법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은 명령문을 자신 속에 포함해야만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보려고 하였다. 도덕 판단의 일차적인 용법은 선택을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는 일정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판단들은 그것들이 환원할 수 없이 규정적이지 않으면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도 일정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헤어가 이러한 주장들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또 그 귀결로서, 도덕 판단은 선택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명령문의 것과 유사한 논리적 성격을 가져야만 한다고 본 그의 주장도 그 자신의 생각처럼 그렇게 분명히 입증된 것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러니까 도덕 판단은 사실 판단만에 의해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거나 올바른 행위의 원리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고 행위나 개개인의 '자유로운' 결단의 문제임을 헤어가 밝혀 보였다고는 더더욱 생각지 않는다.